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통계조사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고등교육통계조사 체제를 개인정보 기반으로 개편하여 202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 다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,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「초·중·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3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
“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로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교육부장관(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	
연락처	(044) 203 - 6632